2024년도 마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 11. 28.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 11. 17.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23. 11. 20.

다. 상정일자 : 제26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2023. 11. 28.)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주민생활복지과장

가.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마포복지재단 출연에 대하여 구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출연대상 : (재)마포복지재단

2)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3) 출연 필요성

○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단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기본재산 및 인건비, 운영비 등의 보통재산 출연 지원

○ 다양한 주민의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복지전달체계 구축 필요

○ 지역자원 총량 확대를 위한 체계적인 모금·배분사업 추진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지원 강화

라. 출연금액 및 내용

○ 출연금액 : 4,267,068천원

○ 출연내용 : 재단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지원

- 기본재산 : 1,500,000천원

- 보통재산 : 2,767,068천원

· 인건비 771,259천원, 운영비 및 사업비 380,614천원,
효도밥상 사업비 1,615,195천원

【 출연금 내역 】

구분		예산액(천원)	세부내용
합계		**4,267,068**	
복지재단 기본재산		1,500,000	∙기본재산 적립
복지재단 보통재산		2,767,068	
복지재단운영	인건비	771,259	∙기본급여,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운영비 및 사업비	380,614	∙공공요금 및 제세, 회의운영비, 사무용 경비 및 자산취득비 등 ∙복지재단 홍보 및 나눔활성화 사업, 네트워크 구축 사업 및 수탁시설 운영 등
	효도밥상 사업비	1,615,195	∙반찬공장 운영 및 효도밥상 급식비 등

※ 출연에 대한 구의회 의결 후, 2024년도 사업예산(안) 결정

4. 참고사항

○ 관련규정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재원)

5. 연도별 출연현황

회계연도	출연금(천원)			비고
	계	기본재산	보통재산	
2023년	1,525,564	1,000,000	525,564	
2022년	999,181	500,000	499,181	
2021년	2,106,235	2,000,000	106,235	

다. 검토보고 (장홍용 전문위원)

○ 본 동의안은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구민에게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립된 마포복지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마포복지재단 출연금에 대해『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재정지원)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재원) 규정에 따라 예산의 출연이 가능하며,『지방재정법』제18조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전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 재단 출연금액 및 내용은

- 2024년도 출연금은 2023년 대비 27억4,150만 4천원이 증가한 42억 6,706만 8천원으로 복지재단 기본재산 15억원과 보통재산 27억 6,706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 기본재산은 4년 동안 50억원 출연을 목표로 2021년에 최초로 20억원

출연, 22년 5억, 23년에 10억에 이어 내년에도 15억원을 기본재산으로 출연 예정이고,

- 보통재산은 마포복지재단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건비 7억 7,125만 9천원, 운영비 및 사업비 3억 8,061만 4천원, 효도밥상 사업비 16억 1,519만 5천원을 산정하여 출연할 예정입니다.

○ 주요 증가사유로는 효도밥상 사업비 16억 1,519만 5천원, 직제개편 등으로 인한 인건비 3억 9,997만 9천원, 수탁 시설 운영비 및 사업비 등 2억 4,953만원입니다.

< 마포복지재단 기본재산 출연계획 >

(단위: 백만원)

구 분	합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기본재산	5,000	2,000	1,000	1,000	1,000

< 마포복지재단 기본재산 출연 실적 >

(단위: 백만원)

구 분	합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기본재산	3,500	2,000	500	1,000	1,500 (예정)

○ 2021년 11월 2일,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내실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출범한 마포복지재단이 2년이라는 시간에 많은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나 집행부에서는 구의회에서 재단 설립 시 우려하였던 사항과 집행부에서 요구하였던 재단설립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매년 늘어나는 불요불급한 인건비, 운영비를 최소화 하여 절감된 기금을 우리 구민에게 한 층 더 나은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 고 자 료

1.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奬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0조(재정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재원)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출연금
2. 그 밖의 수입금

②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구의 출연금
2. 기본재산 운용 및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법인·단체, 개인의 기부금품
4. 그 밖의 수입금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마포복지재단 운영현황

ㅇ 사업(설립)근거

- 민법 제32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ㅇ 추진경위

- '20. 2. 21. 복지재단 설립 기본계획 수립
- '21. 9. 8. 마포복지재단 발기인총회 및 이사회 개최
- '21. 9. 마포복지재단 설립허가 신청(서울시 복지정책과)

ㅇ 설립형태 : 마포구출연기관, 비영리 재단법인, 공익법인

ㅇ 설립허가 : 2021. 11. 2.(대표자: 이홍주)

ㅇ 운영재원 : 구 출연금, 이자수입, 후원금, 기타

ㅇ 기본재산 출연목표: 50억원

- 현 기본재산 : 총35억원(21년도 20억원, 22년도 5억원, 23년도 10억원)

ㅇ 조직·인력 : 이사회(이사17명), 감사(2명), 사무국(2개팀 7명)

ㅇ 주요사업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위기가구 지원
- 나눔네트워크 지역위원회 구축 및 운영
-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복지 역량강화사업
- 효도밥상 후원금(품) 모집 및 급식지원센터 운영
- 위수탁운영(푸드마켓,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등)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 타 : 없 음